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307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645,895,140원, 지방교육세 121,809,5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가. 원고는 2009. 4. 10. [redacted]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50층의 A동 건물 및 지하 6층 지상 40층의 B동 건물 총 연면적 합계 158,655.74㎡(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9. 5. 13. 신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5. 8. 이 사건 건물 중 연면적 138,638.16㎡ 부분(이하 '이 사건 감면부분'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7조 본문 제2호에서 정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받고 취득세 32억 33,003,560원, 등록세 12억 93,201,420원, 농어촌특별세 10억 54,168,220원, 지방교육세 2억 58,640,280원 합계 58억 39,013,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5. 이 사건 건물에 "The Classic 500"이라는 상호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상호로 법인(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용도로 분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2009년 11월경부터 2010. 2. 18. 피고에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단속을 당할 때까지 이 사건 감면부분 중 A동 8층~15층의 일부 연면적 5,324.94㎡ 부분(이하 '게스트하우스 부분'라 한다)를 호텔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취득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 부분에 관하여 감면받은 등록세 101,313,760원, 취득세 210,747,170원, 농어촌특별세 25,328,380원, 지방교육세 1,610,100원 합계 338,999,410원을 추징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임대부분 면적 6,441.3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을 제외한 나머지 152,214.37㎡ 부분(게스트하우스 부분 포함)의 등기가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등록세 4,986,895,860원, 지방교육세 932,610,100원, 농어촌특별세 596,881,75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6,516,387,7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선행 중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선행 중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4. 8. 21. 노인복지시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행 중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그러자 피고는 2015. 7. 1. 다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위 라항과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세액을 제외한 등록세 645,895,140원 및 지방교육세 121,809,5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등의 사유 외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당초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분양 및 이용률의 저조 등의 이유로 2009년 11월경부터 부득이하게 호텔로 사용하게 된 것인바, 원고가 등록세 신고·납부 당시에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50% 감면된 등록세를 신고한 것은 허위가 아니었을 뿐더러, 단순히 허위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09. 5. 13.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0. 5. 13. 이전에 피고 주장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신고기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0. 6. 13.을 기산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이 분명한 2015. 7. 1.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2항 제1호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감사원 심사결정으로 취소된 선행 중과처분은 '원고가 영위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사유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별개의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이다. 따라서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도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3) 이 사건 처분사유는 결국 원고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중과 제외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선행 중과처분의 사유와 동일하여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8. 이 사건 건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감면부분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사용승인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가 유료노인요양시설로 기재되어 있을 뿐 게스트하우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는 사실, 원고는 2009년 6월경부터 게스트하우스 부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료 수입을 얻었고 2009년 11월경부터 2010. 2. 18.까지는 게스트하우스 부분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유료숙박업 영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게스트하우스 부분에서 숙박업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고 광진구청 소속 공무원이 2010. 2. 18.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취득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조례 제48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부분이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이미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일반에 제공하는 유료호텔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졌고, 실제로도 취득 직후부터 유료호텔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입소자의 친지를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광고하고(갑 제6호증의 1, 2), 건축계획도면(갑 제5호증)이나 홍보물(갑 제7호증)에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게스트룸'으로 표시하고, 게스트룸 임대료수입에 관한 계정별원장(을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부터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유료호텔로 사용할 의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 건축계획도면, 홍보물 및 계정별원장은 그 작성시기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에는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입소자들의 가족이나 친지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자 이를 체험프로그램에 사용하면서 소정의 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계정별원장에 체험료 수입까지 사실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정별원장에 용도 외 사용을 감추기 위한 허위 또는 누락된 기재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 법인등기 등의 등록세 중과 면제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와 별도로 신고내용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후적으로 판단하여 중과세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도 이러한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아니라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감면부분이 등록세 중과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후 사후적으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후적 사실을 감추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0. 2. 18.경 이미 원고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과제척특례기간의 적용가부

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는 제1항에서 지방세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던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조항 소정의 '판결 등'이란 그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사원은 선행 중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영위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행 중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요양보호사 등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운영하고, 입소대상이 아닌 노인을 입소시키는 등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선행 중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는 사유로 등록세를 중과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당시의 처분사유가 아닌 별개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새로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건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리대상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는 선행 중과처분에 앞서 2012. 6. 20. 원고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내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추징함"이라고 선행 중과처분의 사유를 기재하였을 뿐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기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추징사유로만 기재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원고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선행 중과처분의 사유가 아니었을 뿐더러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내용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위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이루어진 판단내용과 별개의 새로운 사유인 사후적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 <신설 2003.12.30>]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7

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50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조례 제48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끝>